



제2023 - 7호

# “참된 삶의 힘을 기르는” 팔복교육소식

전주팔복초등학교

행정실: 211-4495

## 2023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

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?

-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,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
\* **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.**

### ■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신청 주체 | 교육비<br>교육급여      | ·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·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<br>☞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·중·고 학교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)에 재학 중이어야 함   |
| 신청 기간 | 교육비              | · (집중 신청기간) 2023년 3월 2일(목) ~ 3월 17일(금)<br>※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,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 |
|       | 교육급여             | · (집중 신청기간) 2023년 3월 2일(목) ~ 3월 17일(금) (상시 신청 가능)   |
| 신청 방법 | 교육비<br>교육급여 (공통) | · (방문 신청) 주민등록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<br>· (인터넷 신청) 원클릭시스템(oneclick.moe.go.kr), 복지포(bokjiro.go.kr)<br>※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(인증서 보유)  |
| 구비 서류 | 교육비<br>교육급여 (공통) | · (주민센터 비치 서류)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온라인 신청시,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)<br>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(PC,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)<br>· (개인 구비 서류)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, 통장 사본(교육급여 신청 시), 신분증 지참(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) |
| 선정 기준 |                  | · 사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“소득인정액”기준   |

\*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, '23.3.2.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<http://oneclick.moe.go.kr>)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※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.

### ■ 지원 대상

- 교육비: 시·도별,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

| 순 | 자격 구분      | 고교 학비      | 급식비        | 방과후 자유수강권  | 교육정보화 |           | 고교 교과서    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PC    | 인터넷(유해차단) |            |
| 1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| ○          | 무상 급식 (중식) | ○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| ○          |
| 2 |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○          |            | ○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| ○          |
| 3 | 법정차상위대상자   | ○          |            | ○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| ○          |
| 4 | 기타 소득기준    | 중위소득 68%이하 |            | 중위소득 80%이하 |       |           | 중위소득 68%이하 |
| 5 | 학교장 추천     | ○          |            | ○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6 | 다자녀(셋째부터)  | ○          |            | ○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○          |

※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(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)



“참된 삶의 힘을 기르는”  
팔복교육소식

전주팔복초등학교

행정실: 211-4495

제2023 - 호

○ 교육급여: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전국 동일)

<참고> 기준 중위소득 :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%는 '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입니다. (단위 : 원)

| 중위소득 \ 가구원수 | 2인        | 3인        | 4인        | 5인        | 6인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중위소득(100%) 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| 중위소득(80%)   | 2,764,924 | 3,547,853 | 4,320,771 | 5,064,550 | 5,782,385 |
| 중위소득(68%)   | 2,350,186 | 3,015,675 | 3,672,656 | 4,304,868 | 4,915,028 |
| 중위소득(50%)  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1 |
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(\*시·군·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)

$$\text{소득인정액} = \text{소득평가액}^{\textcircled{1}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^{\textcircled{2}}$$

① 가구의 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 ② (각종 재산-기본 공제액-부채) × 소득환산율

\*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: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,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‘소득인정액’이 더 높습니다. (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,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)

■ 지원 내용

○ 교육비

| 구분   | 고교 학비              | 급식비                |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    | 교육정보화지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교 교과서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pc                | 인터넷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지원내용 | 입학금·수업료<br>학교운영지원비 | 학기중<br>중식비<br>(무상) | (초·중·고)<br>연 60만원 | 가구별컴퓨터<br>(초1~고1) | 인터넷통신비<br>(유해차단)<br>(초1~고3) | 교과서 실비 |
| 지원방식 | 학교 납부액 지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설치                | 통신사               | 학교 납부액 지원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\*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

○ 교육급여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·수업료 지원

| 구분    | 교육활동지원비             | 교과서비   | 입학금/수업료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초등학생  | 415,000원            | -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|
| 중학생   | 589,000원            | -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|
| 고등학생  | 654,000원            | 교과서 실비 | 학교장 고지금액              |
| 지원 횟수 | 연 1회                | 연 1회   | 입학금(신입생 1회), 수업료(분기별) |
| 지원 방식 | 바우처 방식 변경 학교 납부액 지원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\*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(입학금/수업료) 및 교과서비 지원함

■ 문의: (교무실) 211-2774, (행정실) 211-4495, (중앙상담센터)1544-9654

2023. 3. 2.

전주팔복초등학교장